

예산총칙

제1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의 총칙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1,010,380,265	917,625,591	92,754,674
일반회계	937,961,817	847,168,553	90,793,264
특별회계	72,418,448	70,457,038	1,961,410
기타특별회계	13,241,431	10,909,983	2,331,448
의료급여기금	3,003,712	2,999,469	4,243
수질개선	164,841	155,048	9,793
주민소득지원	2,034,892	817,480	1,217,412
기반시설	165,419	165,419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823,598	823,598	-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5,606,743	5,606,743	-
산업단지조성사업	1,442,226	342,226	1,100,000
공기업특별회계	59,177,017	59,547,055	△370,038
상수도사업	26,807,164	27,156,525	△349,361
하수도사업	32,369,853	32,390,530	△20,677

제2조 예산서의 명세는 별첨 "예산서"와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205,275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 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한다.